

#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13
----------	-----

제출년월일 : 2020.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평창군 읍·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건강문제를 주민 중심의 건강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건강취약부분을 해결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관련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건강마을 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규정(안 제5조)
- 나. 건강마을 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규정(안 제6조)
- 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0. 8. 24. ~ 2020. 9. 13.) 결과, 특이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실-10146, 2020. 8.19.)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실-10146, 2020. 8.19.)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과-48547, 2020. 8.13)

##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건강 자치 실현과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 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위원회”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주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건강마을 조직을 말한다.
2. “건강마을 조성 ”이란 마을의 역사적·자연적·사회적·환경적 자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마을의 건강취약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건강마을 조성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에서의 건강한 삶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참여)** 주민은 누구나 건강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건강마을 조성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건강행태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설치)** 건강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읍·면은 자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읍·면별 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읍·면별 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그 밖의 임원은 위원회 회칙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 밖의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활동을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그 외 명칭과 역할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별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동아리 소모임 발굴 및 지역봉사
2.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3. 지역사회 보건·복지 돌봄 서비스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건강마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각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위원의 선출(신규 포함)은 추천 또는 자발적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한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군수는 위원 제1항에 따른 구성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으로 활동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마을 조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건강취약부분의 개선을 위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마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원 등)**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부계획 수립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문제의 발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3. 그 밖에 건강마을조성 및 건강증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캠페인,보건교육)지원

**제11조(포상)**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위원회 등에 대하여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이 되어있는 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한 것으로 본다.

[붙임]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붙임]

# 각 읍·면별 건강위원회 구성 현황

○ 건강마을 조성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평창군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건강분야의 대표적 민관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평창군 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I 추진근거 및 건강위원의 역할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 2020년 평창군 건강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보건산업과-5888(2020.03.26)】

〈 평창군 건강위원의 역할은? 〉

- 우리 마을의 건강을 건강위원회 직접 주민들과 함께 가꾸어나갑니다.
- 우리 마을의 건강문제를 건강위원회와 주민이 발견합니다.
- 우리 마을에서 필요한 건강사업을 건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 건강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을 평창군이 적극 지원합니다.
- 우리 건강문제를 우리 마을의 힘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 이러한 건강위원의 노력으로 가장 행복한 우리 마을을 만듭니다.

## II 그간의 추진 경과

- 2020년 평창군 건강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2020.03.26.)
- 건강위원회 각 읍·면 소그룹 간담회 개최 (2020.06)
- 평창군 8개읍·면 건강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소그룹 간담회 개최【코로나19 생활방역】
  - 건강마을 조성 지원 사업 이해와 코로나19 건강위원의 역할 설명
  - 평창군 건강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임원 선출 회의
  - 임원 선출 : 건강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3명)

## III 추진 결과

- 평창군 건강위원회 건강위원 위촉장 수여
- 평창군 건강위원회 건강위원 위촉 : 평창군 231명

읍면별	평창	미탄	방림	대화	용평	봉평	진부	대관령
인원수	31명	27명	16명	29명	31명	20명	61명	16명

\* 진부면 : 건강생활지원센터내 자재 운영계획에 따름

- 평창군 건강위원회 건강위원 위촉장 수여식 진행 결과



- 건강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각 읍·면사무소 약식으로 진행 (2020. 6월 ~7월)
- 건강위원회 구성 후 역량강화교육 진행 (2020. 07)



- 평창군 건강위원회 건강위원 역량강화 교육 결과





대화면·용평면 건강안 걷기교육(2020.07.24.)

#### IV 향후 추진계획

- 1차년도(2020년) 계획 : **지역사회와의 동반**
  - 주민조직 구성 및 운영
  - 지역주민, 건강협의체 건강위원들과 관계형성
  - 건강위원회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시행
  - 건강위원회 회칙 정비
- 2차년도(2021년) 계획 : **지역제 파악 및 우선순위 선정 해결전략 수립**
  - 주민조직과 함께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문제 파악
  - 도출된 문제 중 우선순위사업 선정
  -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 토론문화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관련 전략 수립
- 3차년도(2022년) 계획 : **전략실행 및 전담**
  - 소수가 주도하지 않고 다수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 주민조직 운영
  - :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주민참여 활성화(공극적 최종목표)
  - : 주민이 직접 사업계획서 제출로 주민주도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 Health Dream Happy Dream 건강도시 평창 만들기 평창군 건강위원회의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결과보고

평창군 건강위원회가 나서서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마스크 착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8개읍·면 전통시장, 상가, 관공서에 배부하여 주민 스스로 감염병을 예방 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일 시 : 2020년 9월24일(대화면건강위원회), 9월25일(대관령면, 용평면, 평창읍건강위원회), 9월26일(미탄면건강위원회), 9월28일(진부면, 봉평면건강위원회), 9월29일(방림면건강위원회)
- 장 소 : 8개읍면 전통시장, 상가, 관공서
- 대 상 : 지역주민
- 내 용 : 8개읍면 건강위원회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착용 스티커 부착
- 홍보물품 : KF94마스크 1,800개, 마스크착용 스티커 1,000장

##### □ 관련사진



##### □ 사업의 효과 및 향후계획

- 코로나19 창기화로 인해 자칫 해야될 수 있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요성 홍보 효과
- 평창군 전통시장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계속 진행.

## □ 읍·면별 건강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장 위촉 현황

- 총인원 : 231명

구분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용평면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위원수 (명)	31	27	16	29	31	20	61	16
위원장	함영애	지은미	정미경	오준세	김낙현	박옥화	최종만	손정순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연락처	(033) 330 - 4820